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2월 9일

발 의 자 : 박준희·최영수·김동승·한명희
김광수(도봉)·최웅식·이상묵
김광수(노원)·박운기·최조웅
진두생·이승로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집단에너지사업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를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추가함.
(안 제33조제1항제4호마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환경수자원위원회 가. ~ 라. (생략) 5. ~ 10. (생략) ② (생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5.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